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2. 16 선고 2021가단1057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밀알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7. 12.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7. 12.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1) E 주식회사는 2014. 1. 28. D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연 27.4%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7.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71514호로 D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9,722,450원 및 그 중 19,841,169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G, D, 피고 C이 있었는데, 피고들과 G, D은 2017. 10. 30.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7. 12. 18. 접수 제586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 합계 45,045,169원이 있어, 총 재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채권자	금액(단위: 원)
1	H은행	4,500,000
2	I카드	4,013,000
2	I카드	5,787,000
3	J카드	904,000
4	J카드	10,000,000
5	A	19,841,169
합 계		45,045,16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D과 E 주식회사 사이의 대여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9지분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30년간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책임지며 부양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의 기여분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C에게 기여분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사하구 L 대 131㎡
2. 부산광역시 사하구 L, M, N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O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8.27㎡
3. 부산광역시 사하구 L, M, N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O
조표P 블록조 스텔트지붕 단층주택 16.00㎡
4. 부산광역시 사하구 Q 대 95㎡
5. 부산광역시 사하구 Q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R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내지 4층 각 51.61㎡, 지하 47.22㎡

끝.

